



제331회 임시회

2014.06.23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4년 06월 02일
- 회부일자: 2014년 06월 0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근거가 되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(2014.6.30.까지 유효)을 삭제하고,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하여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이며,
-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일반직 4급상당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해당 기관에 책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책정 근거조항 삭제(안 제2조제1호)

- ※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이 2014.6.30.까지 유효하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하여 도의회 사무처 배치 가능

나. 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장(일반직 4급상당 교육전문직원) 정원 책정(2013.4.22. 교육부 승인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근거로 인용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2014.6.30.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,
-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이를 지원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”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현재 인원 그대로 책정하였으며,
- 2013.4.22.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교육정보원 정보지원부장(일반직 4급상당 교육전문직원)의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4.2.13.] [법률 제12394호, 2012.2.13.]

제3조(「지방자치법」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자치단체의 장" 또는 "시·도지사"는 "교육감"으로, "지방자치단체의 사무"는 "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"로, "자치사무"는 "교육·학예에 관한 자치사무"로, "안전행정부장관"·"주무부장관" 및 "중앙행정기관의 장"은 "교육부장관"으로 본다.

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 ① 교육위원회 및 시·도의회는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4.1.21.] [법률 제12280호, 2014.1.21.]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 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 시·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"사무직원"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

조례로 정한다.

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

1. 별정직공무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

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